

국토교통부		보	도 자 료			
		배포일시	2016. 11. 23.(수)	3개년계획 미레기 달라집니다.		
담당 부서	주거복지기획과	담 당 자	• 과장 윤종수, 팀장 박희민, 사무관 노지훈 ☎ (044) 201-3358, 4740			
	공공주택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철흥, 사무관 장대문·김종욱 ☎ (044) 201-4507, 4580			
	행복주택기획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대순, 사무관 장창석 ☎ (044) 201-4522			
모 수 일 시		2016년 11월 24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24.(목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		

##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 포함시켜 실효성 높여 오는 12월 30일부터 변경된 기준 적용

- □ 오는 **12월 30일**부터는 **공공임대주택**(영구·매입·전세·국민임대 및 행복 주택) **입주자 선정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이 적용**된다.
  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지난 7월 27일 입법·행정예고한 「공공 주택특별법」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\* 개정안을 확정(25일 관보 게재 및 고시)했다.
    - \*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(국토부 고시),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,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,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(국토부 고시),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(국토부 고시) 등 총 5건임.
  - 이에 따라, 올해 12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공공임대 주택부터는 변경된 입주자 소득·자산기준이 적용되며, 재계약의 경우에는 사전 안내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내년 6월 30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.

- □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- ① (입주기준-자산) 영구·매입·전세·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한다.
    - \* (현행) 입주자의 자산에 대해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만 제한하고 있으며, 일부 입주자 유형(장애인·탈북자 등)은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 가능함.
    - (영구·매입·전세·국민임대) 영구·매입·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5900만 원 이하,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900만 원 이하\* 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며,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(2,500만원 이하)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.
    - \*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2,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을 각각 적용함.
    - (행복주택)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하여, 세대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·고령자·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, 세대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·사회초년생은 7500만 원과 1억 8700만 원\*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하다.
    - \*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세미만 가구 및 30~39세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임. 또한, 자동차의 경우 사회초년생·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,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.
  - ② (입주기준 소득) 영구·매입·전세·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해 소득 기준이 신설되고,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된다.
    - (영구임대주택)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· 탈북자 등과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\*을 적용한다.
    - \*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(일반 입주자는 50% 이하)의 기준을 적용할 계획임.

- \*\* 이와 함께, 영구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유형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인 장애인 가구를 신설함.
- (매입·전세임대주택) 종전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.
- (행복주택) 신혼부부·산단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 기준을 완화(100%→120%)하던 규정은 폐지된다.
- ③ (재계약기준) 재계약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재계약기준을 신설하고, 현행 재계약기준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된다.
  - (영구·매입·전세·국민임대주택) 입주자가 재계약 시에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.5배 이하\*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  - \* (예)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, 영구임대주택 일반입주자와 기초 수급자 등은 75%, 장애인 등은 105% 이하임.

단, 재계약기준이 신설되는 **영구임대주택의 기존 입주자**에 대해서는 향후 **2회차 재계약까지 변경기준 적용을 유예**한 후, 3회차 재계약부터 소득·자산기준을 적용한다.

또한,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**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**하다.

- (행복주택)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재계약 시 소득기준을 20% 완화해주는 규정도, 형평성을 고려하여 없애고 입주 시 소득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.
- □ 한편,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거나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, 이는 오는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.
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가구 중에서 <sup>①</sup>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30% 이상과 <sup>②</sup>최저 주거기준 미달 모두에 해당하면 우선 입주하고,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로 입주 가능하다.
-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산정 시 임차료는 6개월간의 평균 임차료를 반영하며, 입주 신청 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.
- □ 국토부 관계자는 "이번 제도개선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,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"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박희민팀장(☎ 044-201-335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 참고 1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소득자산기준 개정내용

### □ 입주기준(안)

구분	입주자 유형	소득	<b>=</b>	자산		
		현행	개정안	현 행	개정안	
영구 임대 주택	(1순위) 기초수급자, 한부모가정 등	소득인정액 기준,	현행과 동일	(소득인정액 - 평가시 반영)	현행과 동일	
	(1순위) 국가유공자	중위소득의 40~60%	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%			
	(1순위) 장애인, 탈북자, 아동복지 시설퇴소자 등	소득불문		없음	(총자산) 1.59억원	
	(2순위) 일반	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%	현행과 동일	(부동산) 1.26억 (자동차) 0.25억	(자동차) 0.25억원	
	(2순위) 장애인	<신 설>	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	_		
매입/ 전세 임대 주택	(1순위) 기초수급자, 한부모가정	소득인정액 기준, 중위소득의 40~60%	현행과 동일	(소득인정액 평가시 반영)	현행과 동일	
	(1순위) 장애인	<신 설>	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%	_	(총자산)	
	(2순위) 장애인	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	현행과 동일	없음	1.59억원 (자동차)	
	(2순위) 일반	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%	현행과 동일	(부동산) 0.5억 (자동차) 0.22억	0.25억 원	
국민 임대	면적 50㎡이하	평균소득의 50% (1순위)/70%(2순위)	현행과 동일	(부동산) 1.26억	(총자산) 2.19억원 (자동차) 0.25억원	
	면적 60㎡이하	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%	현행과 동일	(자동차) 0.25억		
행 복 주 택	신혼부부(세대), 산단근로자(세대), 고령자(세대)	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 (신혼부부, 신단근로자는 맞벌이시 120%)	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	(부동산) 2.16억 (자동차) 0.28억	(총자산) 2.19억원 (자동차) 0.25억원	
	사회초년생(본인)	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80% (세대주인 경우 세대합산 100%)	현행과 동일	(부동산) 2.16억 (자동차) 0.28억	(총자산) 1.87억원 (자동차) 0.25억원	
	대학생(본인)	본인과 부모 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	현행과 동일	(부동산) 1.26억 (자동차) 0.25억	(총자산) 0.75억원 (자동차) 미소유	
	주거급여수급자	소득인정액 기준	현행과 동일	(부동산) 1.26억 (자동차) 0.25억	(소 <del>득</del> 인정액 평가시 반영)	

## □ 재계약기준(안)

구분	입주자 유형	소-	특	자산		
		현행	개정안	현행	개정안	
영구 임대 주택	기 <del>초수급</del> 자, 한부모 가정 등		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%	없음	(총자산) 1.59억원	
	국가유공자, 장애인, 탈북자, 아동복지 시설퇴소자 등	없음	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5%			
	일반(2순위) 청약저축가입자		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%			
매입/ 전세 임대 주택	기초수급자, 한부모	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%	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%	(소득인정액 산정시 반영)	(자동차) 0.25억원	
	장애인	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	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5%	없음		
	일반	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%	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%	(부동산) 0.5억 (자동차) 0.22억		
국민 임대 주택	면적에 따라,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%/70%/100%	면적에 따라,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% / 105% / 150%	현행과 동일	(부동산) 1.26억 (자동차) 0.25억	(총자산) 2.19억원 (자동차) 0.25억원	
행복	신혼부부(세대)	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20% (맞벌이시 144%)	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	(부동산) 2.16억 (자동차) 0.28억	(총자산) 2.19억원 (자동차) 0.25억원	
	산단근로자(세대), 고령자(세대)	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 (맞벌이시 120%)	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	(부동산) 2.16억 (자동차) 0.28억	(총자산) 2.19억원 (자동차) 0.25억원	
	사회초년생(본인)	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96% (세대주인 경우 세대합산 120%)	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80% (세대주인 경우 세대합산 100%)	(부동산) 2.16억 (자동차) 0.28억	(총자산) 1.87억원 (자동차) 0.25억원	
	대학생(본인)	본인과 부모 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	현행과 동일	(부동산) 1.26억 (자동차) 0.25억	(총자산) 0.75억원 (자동차) 미소유	
	주거급여수급자	소득인정액 기준	현행과 동일	(부동산) 1.26억 (자동차) 0.25억	(소득인정액 평가시 반영)	